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3
----------	-----

2023. 11. 27.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3. 강남구청장(총무과)

나. 상정의결

-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1. 27.)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이호현)

가. 제안이유

-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확대 및 신설하고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후생복지 사업의 확대 및 신설
(안 제7조제10호, 제13호, 제17호 내지 제19호)
- 사업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7조제2호, 제6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 (2023.10.13. ~ 10.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는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현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조문 내 지원사업 각 호들을 정비하고 신규사업과 현재 시행 중이나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는 17개 호로 열거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들이 있는데, 개정안으로 제출된 안 제17조에는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신설하고 기존 제17호를 제20호로 하려는 것이며, 그 외 4개 호는 각 호의 내용을 추가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원 후생복지 담당부서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최대한 조례안에 담으려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부행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으며,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안정적으로 제고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사업들의 구체적 조례 내 반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니, 향후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례 내 예시된 사업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 중 신설된 제17호나 제19호 관련 사업이 많은데, 조례안 각 호와 관련하여 시행되지 않거나 저조한 사업들은 향후 개정하여 각 호를 다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덧붙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2024년도말 조성액이 5억52백만원 규모로 소진되고 있으니,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또는 집행규모 조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